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2026년 10월 0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및 「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연구원, 연수생 및 그 밖에 본교와 교육 · 연구 · 근로 관계에 있는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본교의 업무 또는 교육 · 연구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발생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지침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조력자, 대리인 및 그 밖의 사건관련자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 상담, 조사, 심의, 보호, 회복 및 사건 종결 이후의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신원노출, 비난, 회유, 압박, 보복, 따돌림, 명예훼손 또는 신분 · 학업 · 연구 · 등에 관한 불이익을 받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2차 행위자"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말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여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

3.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4. 2차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재발방지대책 및 조직문화 개선
6. 그 밖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사항은 본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2차 피해 예방교육) ① 본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본교가 실시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및 2차 피해의 개념
2. 2차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절차
3.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4.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고충상담원 및 사건처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사건처리절차와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 조사위원, 심의위원 및 그 밖에 사건처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신고 또는 상담 목적을 부당하게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사실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피해를 예단하는 행위
5.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신고인과 대면하도록 하는 행위
7. 사건관련자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에 관하여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9. 그 밖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구성원의 책무) 본교 구성원은 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철회하도록 종용하거나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3. 사건 내용,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평판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5.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자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6. 신고 · 상담 · 진술 ·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이에 준하여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

제8조(2차 피해 사건의 상담 및 접수) ①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2차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상황 및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2차 피해 사건의 접수방법과 사건번호 부여 등 세부적인 절차는「건신인권센터 운영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2차 피해 사건의 조사) ① 여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 사건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가 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 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조치 등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사건의 심의) ①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및 이에 관련된 2차 피해 사건은「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사건 중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공정성 확보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보호) ① 센터는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거나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신고인 또는 2차 행위자의 분리
2. 접근 및 연락 제한
3. 수업 · 연구 · 근무 공간 또는 업무의 조정
4. 학습권 · 연구권 · 근로권의 보호
5. 상담 · 의료 · 법률 등 외부 전문기관 연계
6. 그 밖에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③ 피해자에게 취해지는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하게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여성폭력 또는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신고, 상담, 진술, 조사협조, 조력 또는 대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고인, 조력자 및 사건관련자에게 신분, 인사, 학업, 연구, 근로, 평가 또는 그 밖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유지) ①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상담 · 조사 · 심의 · 보고 또는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건 내용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관계 법령 및「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 및 재발방지) ① 2차 피해가 인정된 경우 센터는「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 교육, 시정조치 또는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2차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2차 피해가 반복되거나 조직문화와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는 실태 또는 인식조사, 특별교육, 외부컨설팅 등 조직문화 개선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관계 법령, 「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